

---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
**금융규제 유연화 방안**  
**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**

---

2020. 8. 26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

#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추진 현황 점검 · 평가 .....	2
가. 자본적정성 규제 .....	2
나. 유동성 규제 .....	4
다. 자산건전성 규제 .....	7
라. 면책 등 .....	8
III.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 .....	10
IV. 향후 일정 .....	11
[참고]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요약	12

## I. 추진 배경
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을 마련·추진 중('20.4~)

\* 4.16(목)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, 4.17(금) 발표

### < 「금융규제 유연화 방안(4.17)」 주요 내용 >

#### [ 기본 원칙 ]

<b>① 필요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“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” 적용</li></ul>	<b>② 한시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원칙적으로 <b>한시적 유예</b>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</li></ul>
<b>③ 신속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극적 법령해석 등 <b>시행 가능한 조치</b>부터 <b>先추진</b></li></ul>	<b>④ 효과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<b>현장애로 적극 해소</b></li></ul>

#### [ 주요 방안 ]

자본 규제	유동성 규제	영업 규제 등
· 증언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·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	·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
·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	·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	·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
·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	·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·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
·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·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세부 방안별 추진 현황을 점검·평가하고,

- 기한 종료를 앞둔 조치들\*의 기한 연장, 4월 이후 상황변화\*\*로 인한 보완 조치 필요 사항 등을 검토·보완

\*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 완화,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한시적 완화

\*\* 산은의 역할 확대[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 운영 등]에 따른 순안정자금조달 비율(NSFR) 규제 유연화 확대 필요성

※ 8.26(수)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 · 의결

## II. 추진 현황 점검 · 평가

- ◇ 대부분의 조치들은 시행 완료하였으며 남은 과제(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)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
- ◇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

### 가. 자본적정성 규제

#### □ [공통]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

- (현황)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 적용 [법령해석\*(은행(4.29)) 및 시행세칙 개정\*\*[보험(6.30), 증권(6.18)]]
  - \* 상장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300%이나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등이 있는 경우 100% 적용 가능 [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[별표3] 134.바(2)]
  - \*\* 보험사(8~12%→6%) 및 증권사(9~12%→4.5~6%) 출자액 위험계수 인하 [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]
- (평가)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하여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

< 조치 전·후 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비율 감소폭 비교 >

구분	조치 전(A)	조치 후(B)	차이(C)
(은행) BIS비율	<b>0.27%p ↓</b>	<b>0.09%p ↓</b>	<b>+0.18%p</b>
(보험) RBC비율	<b>1.4%p ↓</b>	<b>0.7%p ↓</b>	<b>+0.7%p</b>
(증권) NCR비율	<b>29.5%p ↓</b>	<b>14.7%p ↓</b>	<b>+14.8%p</b>

#### □ [은행]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 조기 시행

- (현황) 「바젤III 최종안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'20.2분기부터 시행'
  - \* 시행세칙 개정(4.8) → 도입 신청 접수(5.29) → 승인(6.26)
- (평가) 대부분 은행(19개 중 15개) 및 은행지주회사(8개 모두)가 조기 시행에 참여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\* 예상
  - \* 은행 : 평균 1.91%p 상승, 은행지주회사 : 평균 1.11%p 상승 (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체 추정 결과)

## □ [은행] 시스템적 중요은행(D-SIB) 선정대상\*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

- \* 기존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-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(1%p) 부과
- (현황)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-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(6.10)하고 '21년도 선정시 반영(6.24)
- (평가)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이 D-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 자본 적립의무(1%p)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

## □ [은행] 「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\*」 시행시기 연기

- \*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%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바젤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우리나라 '19.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검토 중
- (현황)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(4.17일 보도자료 배포)
- (평가)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

## □ [증권]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\* 규제 완화

\* 순자본비율(NCR) = (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) / 필요유지자기자본

- ① (현황)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(단,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)

- \* (1)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 위험값 하향조정(0~32%→0~16%)[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(6.18)]
- (2)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(위험값 100%)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(0~32%) 적용[금융 투자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(4.29)]

- (평가)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\*이 확대

- \* 4.20일 이후, 6개 종투사가 총 9,380억원, 3개 증권사가 총 2,019억원 공급 (6월말 기준)

② (현황) 일정 범위 내\* 중소·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개정(7.27)

\* (일반 증권사) 자기자본의 50% 이내, (중기특화 증권사) 자기자본의 100% 이내

- (평가)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#### □ [지주]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

○ (현황)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'20년 말까지 10%p 확대'\*[규정 개정\*\* 및 금융위 의결(5.27)]

\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  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\*\*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○ (평가)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

### 나. 유동성 규제

#### □ [은행]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\* 한시적 완화

\* 고유동성자산 /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≥ 외화 80%, 통합 100%

○ (현황) 9월말까지 외화 LCR 80%→ 70%, 통합 LCR 100%→ 85%로 인하(4.16, 금융위 의결\*)

\*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LCR 비율을 하향할 수 있음[은행업감독규정 26조①2호 등]

○ (평가)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

-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 및 시장 불안 완화

\* 단기기산금리(bp) : '20.2월(1.7) → 3월(62.0) → 4월(52.3) → 5월(1.1) → 6월(1.4)

중장기기산금리(bp) : '20.2월(38.3) → 3월(65.6) → 4월(134.2) → 5월(90.1) → 6월(76.6)

스왑레이트(% 3M) : '20.2월(△0.57) → 3월(△1.42) → 4월(△0.78) → 5월(△0.05) → 6월(△0.27)

-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<sup>\*</sup>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<sup>\*\*</sup>에 기여

\* 국내은행 통합 LCR : 8.9%p ↓ [(3월) 111.5% → (7월(잠정)) 102.6%]

\*\* 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: ('19.1~6) +27.6조원 → ('20.1~6) +81.3조원[195%↑]

## □ [은행] 예대율<sup>\*</sup>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

\* 원화 대출금(가계대출×1.15+개인사업자대출×1+법인대출×0.85) / 원화 예수금 ≤ 100%

- (현황) '21.6월말까지 5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발급(4.29)

- 한편,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 (100%→85%) (은행업감독규정 개정(6.24))

- (평가)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

\* 예대율 : 2.2%p ↑ [(3월) 95.8% → (7월(잠정)) 98.0%]

-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(7.1일부터 시행됨)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지원 여력 확대에 기여할 전망

## □ [산은] 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)<sup>\*</sup> 한시적 적용 유예

\* NSFR(Net Stable Funding Ratio) : 안정자금가용금액 /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≥ 100%

- (현황) 산은의 특수성<sup>\*</sup>을 고려하여 '21.6월말까지 10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(5.8)

\*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특수성 등을 감안

- (평가) NSFR 관리부담 완화를 통해 산은의 코로나19 지원<sup>\*</sup> 확대에 기여

\* '20년중 산은의 코로나19 지원 목표금액은 총 19.9조원(정책자금 5.0조원, 회사채 신속인수 2.2조원 등)이며 '20.7월말까지 약 5.7조원 집행

## □ [보험]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

- (현황)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\* 발급(4.21)

\* 보험업법시행령상 RP매도가 허용되는 "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"에 해당함을 명시

- (평가)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·증안펀드 참여에 기여

\* 보험사 채안·증안펀드 출자금 중 약 7.2%를 RP매도를 통해 조달

## □ [보험]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

- (현황)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(4.20)하고 '20.6월 기준 평가 진행 중'

- (평가)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

\* 평가대상 41개사 중 32개사(78%)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

## □ [여전,저축] 유동성비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/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 $\geq 100\%$

- (현황)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\*으로 인한 10%p이내 위반에 대해 '21.6월 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' 발급\*\*

\* 4.1일 발표한 「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지원대상

\*\* (저축) 비조치의견서 발급 (5.6)

(여전) 개별 여전사가 비조치의견서 신청시 발급 예정(아직 신청사례 없음)

- (평가) 유동성비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\* 실시에 기여

\* 만기연장·이자상환유예 실적(8.14 기준) : (저축) 3,786억원, (여전) 2,929억원

## □ [저축,상호] 예대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대출금 / 예수금  $\leq$  (저축은행) '20년: 110%, '21년: 100% (상호금융) 80~100%

- (현황)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%p이내 위반에 대해 '21.6월 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' 발급\*

\* (저축은행) 5.6일, (상호금융) 4.29일

- (평가) 예대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\* 실시에 기여

\* 만기연장·이자상환유예 실적(8.14 기준) : (저축) 3,786억원, (상호) 2,113억원

## 다. 자산건전성 규제

### □ [공통]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\*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

\* 全 금융권은 4.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실시→ 건전성 분류 하향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, 미수 이자의 수익인식 가능성 등 우려

- (현황)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(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)할 수 있고,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\*

\* (은행·보험) 5.4일, (저축은행) 5.7일, (여전·상호) 4.29일

※ 全 금융권의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→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

- (평가)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\*하는데 기여

\* 전 금융권 만기연장·이자상환유예 실적(8.14 기준)  
: (만기연장) 52.2조원(20.3만건), (이자상환유예) 756억원(5,997건)

### □ [여전]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\* 개선

\* 기존 여전업감독규정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"고정 이하"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반면, 저축은행·상호금융업은 다른 소득 유무, 영업 계속 여부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"요주의이상"으로 분류 가능

- (현황) 폐업중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도록 규정 개정(4.29)

- (평가) 실제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## 라. 면책 등

### □ [공통]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

- **(현황)**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 시스템을 구축<sup>\*</sup>하여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(4.16)

\* (대상)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  
(요건)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
(절차)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

- **(평가)**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### □ [공통] 경영공시·보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

- **(현황)**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공시·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\*

\* (은행·보험·금투) 5.4일, (여전·저축·상호) 4.29일

- **(평가)**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적 불확실성 제거 및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

\* 현재(8.13일)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공시 등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는 없음

### □ [보험]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(TM) 절차 준용 허용

- **(현황)**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·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(4.10)

\* 단, 녹취내용 점검, 청약철회기간 연장(+45일)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

- **(평가)**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면채널의 보험영업 위축 방지에 기여

## □ [여전] 카드사 레버리지\*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

\* [총자산 – 차감항목(온렌딩대출)] / 자기자본 ≤ 6배

- (현황)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(6배→8배\*) 및 총자산 계산시 가계/기업대출 가중치 차등적용\*\*을 위한 규정개정 추진 중

\*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초과시 이익배당 제한(당기순이익의 30%내)

\*\* 가계대출 115%, 기업대출 85%(비카드 여전사에도 적용)

- (평가) 당초 7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수렴\*, 규제 심사 등으로 계획 대비 지연

\* 7배 초과시 이익배당 제한방식, 가중치 차등적용으로 규제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여전사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

- 다만,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시간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한 시행시점('20.10월) 전까지 완료 예정

## □ [저축] 영업구역內 의무여신비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(수도권 50% 기타 40%) 유지 의무

- (현황)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%p이내 위반에 대해 '21.6월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(5.6)

\* '20.4월 및 5월에 각각 1개, 3개사가 5%p 이내에서 (잠정)비율 미준수

- (평가)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

\* 저축은행 만기연장·이자상환유예 지원 실적(8.14 기준) : 3,786억원

## □ [정책금융기관]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(현황)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하도록 평가지침\* 개정(4.29)

\*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

- (평가)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\*에 기여

\* 자금공급 실적: ('19.1~7월) 114.4조원 → ('20.1~7월) 159.9조원 (39.8%↑)  
(산은·기은·수은 실적 합계)

### III.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

- 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지속할 필요
- ◇ LCR 등 기한도래가 임박한 조치의 기한을 연장하고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적용

#### ①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완화 기한 연장

- (**통합 LCR**)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은행권의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한 연장
    - \* 통합 LCR 현황(20.7월 기준, %) : (국내은행) 102.6, (시중은행) 98.1, (지방은행) 101.3
      - 시중은행(6개) 중 4개, 지방은행(6개) 중 1개가 100% 하회
  - (**외화 LCR**) 외화LCR은 통합LCR의 일부이므로 병목 현상\*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LCR과 함께 연장
    - \* 외화 LCR만 정상화할 경우 통합 LCR 완화 효과 희석 우려
    - \*\* 외화 LCR 현황(20.7월 기준, %) : (국내은행) 113.3, (일반은행) 111.1, (특수은행) 122.7
- (기한) “9월 말” → “21.3월 말”까지로 연장
- ※ 조치 사항 : 금융위 의결(8.26)

#### ②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산정기준 완화\* 기한 연장

- \* (1)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**9월말까지**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 위험값 하향조정(0~32%→0~16%)  
(2) 증권사가 **9월말까지**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(위험값 100%)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(0~32%) 적용
- 코로나19 사태 지속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증권사를 통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유연화 적용기한을 연장

→ (기한) “9월 말” → “12월 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 :

(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)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(9월)  
(증권사 기업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) 금융위 의결(9월)

### ③ 산은 NSFR 적용 유예 폭 확대 및 기한 연장

-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의 역할 확대<sup>\*</sup>로 산은에 대한 NSFR 규제 유연화를 확대할 필요

\* 규제 유연화 방안(4.16) 이후 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 운영 역할 등 추가

- 산은의 조달구조 및 자금공급 증가 규모 등 감안시 향후 2~3년간 NSFR 90% 하회<sup>\*</sup> 가능성

\* 산은 자체 추정

→ (유예 폭) “10%p” → “20%p”(100%→80%)로 확대,  
(기한) “21.6월말” → “22.6월말”까지로 연장

※ 조치 사항 :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(9월)

## IV. 향후 일정

### □ 보완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

-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: 8.26일 금융위 의결(완료)
- 증권사 기업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: 9월중 증선위·금융위 상정·의결
-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: 9월중 금투업규정시행세칙 개정
- 산은 NSFR 적용 유예 폭 확대 및 기한 연장 : 9월중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

### □ 기타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·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

-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

### □ 한편,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전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

-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

# 참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[요약]

업권	세부방안	추진 현황	향후 계획
<b>가. 자본 적정성 규제</b>			
공통	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·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·보험사·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	-
은행	「바젤III 최종안」 조기 시행	· '20.2분기부터 시행	-
은행	D-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	· '21년도 D-SIB 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(제주은행) 제외	-
은행	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시행연기	· 시행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	-
증권	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	· '20.9월 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0~32% → 0~16%)	적용기한 연장 '20.9월말 → '20.12월말
	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	· '20.9월 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(100% → 0~32%)	적용기한 연장 '20.9월말 → '20.12월말
	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	· (영구적으로)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	-
지주	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· '20년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	-
<b>나. 유동성 규제</b>			
은행	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	· '20.9월말까지 80% → 70%	적용기한 연장 '20.9월말 → '21.3월말
	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	· '20.9월말까지 100% → 85%	적용기한 연장 '20.9월말 → '21.3월말
은행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.6월말까지 5%p 완화(100→105%)	-
	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	· '20년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(100 → 85%)	-
산은	NSFR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.6월말까지 10%p 완화(100→90%)	완화폭 확대 10%p → 20%p 적용기한 연장 '21.6월말 → '22.6월말
보험	채안·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	· 법령해석 발급	-
보험	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· '20.6월(9월중 평가 완료 예정), 9월 기준 보험사 유동성 평가시 반영	-
여전 저축	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.6월말까지 10%p 완화(100→90%)	-
저축 상호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.6월말까지 10%p 완화(100→110%)	-
<b>다. 자산 건전성 규제</b>			
공통	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	· 법령해석* 안내 공문 발송 * ①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 이자수익 인식 가능	-
여전	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	· 원리금 회수 가능성성이 충분한 경우 '요주의' 이상 분류 허용	-
<b>라. 면책 등</b>			
공통	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	· 검사·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	-
공통	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	· 비조칙의견서 발급	-
보험	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	·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 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	-
여전	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	· 레버리지 한도 확대(자기자본 $\times$ 6배 ~ 8배), 가계/기업대출 가중치 차등화(115%/85%) *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예정(9월중)	-
저축	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'21.6월말까지 5%p 완화	-
정책 금융	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	· 금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, 공급실적 우선 평가	-